

평소 소방행정발전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, 위험물 용기(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가 아닌 일반용기)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준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도시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위험물 관련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위험물안전팀 (☎979-7119)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위험물 저장·취급·운반 용기 표시기준

- ◆ 위험물 용기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?
 - 고체, 액체를 저장·취급·운반하기 위한 일반용기
cf)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용기(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19] Ⅱ.적재방법 제13호 참조)
- ◆ 용기 표시사항 (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19] Ⅱ.적재방법 제8호)
 1. 위험물의 **품명·위험등급·화학명 및 수용성**
 2. 위험물의 **수량**
 3.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**주의사항**

위험물 용기 표시의 예외

- ◆ 용기의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인 경우
 - 조건 : 제1류,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(위험등급 I 제외) 저장·취급·운반 시
 - 품명은 통칭명으로, 주의사항은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시로 대체 가능
- ◆ 위험물의 수량, 주의사항 외 다른 표시는 생략 가능하며, 주의사항은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시로 대체 가능한 경우
 - 제4류 위험물 중 화장품(에어졸 제외) 300ml 이하(150ml 이하는 주의사항도 생략 가능)
 - 제4류 위험물 중 에어졸 300ml 이하
 -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 3000ml 이하(통칭명 병기)
- ◆ 국제연합에서 규정한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GHS에 따른 표시
 - 「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」(소방방재청고시 제2008-18호)에 적용할 경우 인정
- ◆ 동일물질에 위험물안전관리법,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중복 적용될 경우
 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 52조에 의거 「화학물질의 용기·포장에 대한 표시방법」(환경부고시 제2009-173호)에 의한 통합경고표시를 할 수 있음

위험물 용기 표시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

- ◆ 과태료 :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(과태료) 규정에 의거 부과(200만원 이하)